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액 탁송품·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6.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판정을 위한 채납액 납부비율의 계산방식을 채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위법한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세운송 관세행정에 맞게 보세운송의 신고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

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개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

1) 잠정조치 결정 기한 확대(안 제61조제3항)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 연장한 기간 내에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결정을 1개월 이내,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 연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함.

2) 재심사 결정 기한 예외 신설(안 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을 1개월 범위 내에 연장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변경(안 제95조제1항)

코모로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최혜국대우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삭제함.

라.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판정을 위한 채납액 납부비율

계산방식 변경(안 제141조의5제1항제1호)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초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의 회수 절차 명확화(안 제213조제3항 신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 신청 항목 정비(안 제226조제1항)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되고 있는 관세행정에 맞추어 신고 또는 신청인 정보, 위험물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사.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마련(안 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우편물 등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장의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상표권자 및 신고인 또는 화주의 입증자료 제출, 세관장의 통관보류 여부 결정 등의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를 규정함.

아. 관세청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제도 개선

1) 관세청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안 제263조의3)

종전에는 마약류 관련 우편물 및 범죄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이외 임시마약류, 마약류 원료물질과 관련한 우편물 또는 범죄자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구체화(안 제263조의3)

종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성명·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5 제3호나목)

종전에는 승객예약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기술·설계·고안·공예”를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로 하고, “개발된”을 “수행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단서 중 “20일”을 “1월”로 한다.

제70조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재심사 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사신청 대상물품과 연계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제3항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62조제3항단서”로 하고, “법 제62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제113조제2항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41조의5제1항제1호 중 “최근 2년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체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초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 일 전일까지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등

제204조의 제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비율 과세의 적용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혼용할”을 “혼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를 “내국물품의 혼용비율에 따른 과세의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 작업으로써”로 한다.

제2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사항(제7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류·명칭”을 “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 번호,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품명·규격·수량”을 “품명·규격·중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 또는 신청인의 구분·상호·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9. 담보의 구분 및 담보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관리 및 취급이 필요한 물품 해당 여부

제2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3조의2(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①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239조부터 제2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이 조에서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와 관세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원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자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

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8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38조제1항”을 “법 제2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의3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로,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를 “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밀수·유통·투약·밀조”로,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영문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로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별표 4 표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타인”을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으로, “할 것을”을 “하도록”으로 한다.

5의2.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경우	법 제275조의3제1항제1호
5의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5조의3제1항제2호

별표 5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실로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 제4호			
1)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승객예약자료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0만원	25만원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제243조의2: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 2026년 7월 1일

제2조(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개시된 덤핑조사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요청한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편의관세 적용 대상국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상습채납자 등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상습채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 단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미반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운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운송을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법 제275조의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범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u>기술·설계·고안·공예</u>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u>개발된</u> 것은 제외한다.	4. ----- <u>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u> --. ----- <u>수행된</u> -----.
제39조(가산세) ①·② (생 략)	제39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2조의2제1항 <u>제8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u>제9호</u> ----- ----- ----- -----.
④·⑤ (생 략)	④·⑤ (생 략)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70조(덤 평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재심사 외의 덤 평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사신청 대상물품과 연계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제3항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⑭ (현행 제4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⑧ (생략)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95조(편의관세)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의(이하 “편의관세”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에디오피아·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 ·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② ~ ⑤ (생략)

제113조(제조·수리공장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62조제3항단서-----

----- 같은 조 제1항-----

-----.

제95조(편의관세) ① -----

-----.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 ·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3조(제조·수리공장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
 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1조의5(고액·상습채납자 등
 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채납관
 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
 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
 거나 채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채납액 납부비
 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1

0년-----

-----.

-----.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5(고액·상습채납자 등
 의 명단공개) ①-----

-----.

1. -----

채납액 -----

최근 2년간의 채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 상 예정자의 채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 정자가 납부한 금액		

채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 상 예정자의 채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 전년 초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채 납액 중 납부한 금액		

2. 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② (생 략)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

2.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
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마약류

나. (생략)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
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
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생략)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
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
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마약류등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을

2. (생략)

②·③ (생략)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②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비율 과세의 적용 승인) ①

-----.

1. 혼용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내국물품의 혼용비율에 따른 과세의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 작업으로써-----

-----.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

④・⑤ (생략)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송수단의 <u>종류·명칭</u> 및 번호	<u>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 ----- ----- <u>사항(제7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u>----- -----. ----- ----- ----- ----- -----. 1. ----- <u>종류</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u>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생산지 또는 제조지</u>	3. ----- -- <u>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 번호,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품명·규격·수량 및 가격</u>	5. <u>품명·규격·중량</u>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신고 또는 신청인의 구분·상호·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u>
<u><신설></u>	9. <u>담보의 구분 및 담보금액</u>
<u><신설></u>	10. <u>보세운송 사유</u>
<u><신설></u>	1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관리 및 취급이 필요한 물품 해당 여부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43조의2(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①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239조부터 제2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

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이 조에서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와 관세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원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자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 등) ① ~ ③ (생략)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 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u>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관세청장 이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수 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 물의 화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 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통관보류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 <u>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른 결정 을 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 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u>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 ----- ----- -----.
--	---

1. (생략)

2.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관
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되어 있지 않을 것

3. (생략)

⑤ ~ ⑨ (생략)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
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
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
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
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
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
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
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
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3조제1항-----

3.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

-----.

1. -----

----- 마약류
등을 -----

2. ----- 마약류
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
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
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
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
벌내용

4. -----

가. 마약류등의 밀수 · 유통 ·
투약 · 밀조 -----

-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신 설>

<신 설>

나. 마약류등의 밀수 · 유통 · 투약 · 밀조 -----
-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성명을 포함한다)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

5. 국방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등의 밀수 · 유통 · 투약 · 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로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성명을 포함한다)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